

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2.03.01

개정 2014.11.03

개정 2017.06.01

개정 2017.09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의 직무,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
1. 취업, 창업 활성화 계획 수립
2. 취업,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취업, 창업, 진로 관련 교과목 개발 및 운영
4. 취업, 창업, 진로상담 지원
5. 그 밖의 취업, 창업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

제3조(조직) ①센터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,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제4조(취업창업지도위원회) 취업창업지도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관계부서의 협조) 센터는 관계부서와 스쿨(원)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평가) 센터는 당해 연도 실적을 취업창업지도위원회를 통해 평가 받으며, 그에 대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7조(기타) ①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대학 자체 예산
2. 정부지원 사업 예산
3. 기타 찬조금

②회계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기타)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